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의 범위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 추가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0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3
1. '24~'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별 지출액	13
2. 질환 예방 지원 사업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구성	15

I. 개요

1. 제안경위(의안번호 제2216208호)

가.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1. 21.

다. 회 부 일 : 2026. 1.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와 2위로 나타나고 있고, 암과 마찬가지로 흡연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第25條(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4. (생략)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u>암의</u> 치료를 위한 사업 6. ~ 12. (생략) ②·③ (생략)	第25條(기금의 사용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u>암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u> <u>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u> <u>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u> ----- 6.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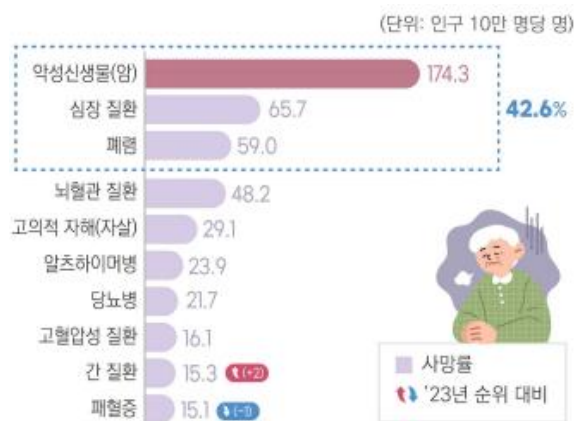
2. 검토 사항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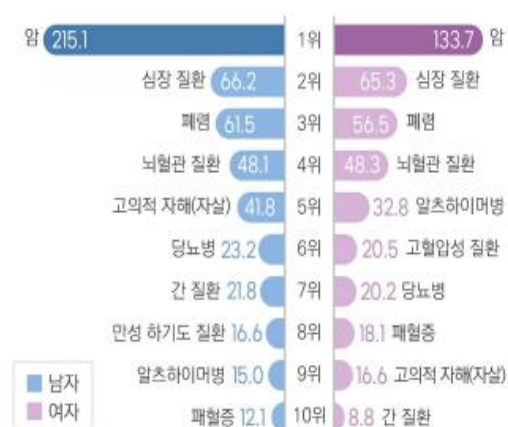
○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는 크게 성별, 나이, 가족력 등 교정 불가능 위험인자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흡연 등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가능한 교정 가능 위험인자로 분류됨.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134.7명으로 악성신생물(암, 174.3명)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임. 2014년(113.9명) 대비 약 18.3%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심장 질환(65.7명), 뇌혈관 질환(48.2명), 고혈압성 질환(16.1명) 순으로 사망원인이 높았음.

< 사망순위 >



< 성별 사망원인 순위 >



*자료 : 통계청, 2024 사망통계

- 한편, 2024년 고혈압, 심장질환 및 대뇌혈관질환의 진료비는 13조 27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46조 4,693억원의 28%에 해당하며 악성신생물(암)의 진료비보다 높았음.

< 만성질환 진료현황 >

구분	진료실인원수(천 명)					진료비(억 원)				
	2020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2020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계	20,081	22,489	22,937	2.0	3.4	370,005	445,399	464,693	4.3	5.9
고혈압	6,742	7,477	7,619	1.9	3.1	39,648	46,575	47,598	2.2	4.7
당뇨병	3,348	3,833	3,969	3.6	4.3	29,723	36,303	37,693	3.8	6.1
심장질환	1,625	1,885	1,928	2.3	4.4	30,649	39,839	41,080	3.1	7.6
대뇌혈관질환	1,044	1,216	1,233	1.4	4.3	33,242	39,533	41,600	5.2	5.8
악성신생물	1,664	1,926	1,983	2.9	4.5	87,070	108,707	114,648	5.5	7.1
간의 질환	1,848	1,938	1,903	-1.8	0.7	10,618	11,983	11,901	-0.7	2.9
정신및행동장애	3,445	4,151	4,324	4.2	5.8	46,945	55,267	58,753	6.3	5.8
호흡기질환	39	29	27	-7.8	-8.7	1,299	1,106	1,108	0.2	-3.9
신경계질환	3,174	3,483	3,489	0.2	2.4	29,836	31,389	31,754	1.2	1.6
갑상선의 장애	1,430	1,619	1,635	1.0	3.4	3,855	4,921	5,038	2.4	6.9
만성신부전증	260	326	345	5.7	7.3	22,474	26,727	28,225	5.6	5.9
관절병증	6,452	7,252	7,435	2.5	3.6	32,344	40,208	42,375	5.4	7.0
만성호흡기질환	626	821	791	-3.7	6.0	2,301	2,843	2,920	2.7	6.1

주) 진료일 기준(2025년 4월 지급분까지 반영), 건강보험 진료현황(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진료실인원수는 약국 제외, 진료비는 약국 포함

*상병코드: 고혈압(I10-I13, I15),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I60-I69), 악성신생물(C00-C97, D00-D09, D37-D4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에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범위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관련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과 같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범위 확대 여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 재원인 담배부담금의 설치목적과 함께 「국

민건강증진법」의 제정목적 및 이에 근거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범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일종의 특별부담금임.¹⁾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특별부담금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니어 특정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어야 하고(집단의 동질성), 특별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객관적 근접성),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만한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집단적 책임성), 특별부담금의 수입이 특별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집단적 효용성).²⁾

○ 흡연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심뇌혈관질환 사망자 4명 중 1명은 흡연으로 사망함. 흡연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의 질환별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 대비 고혈

1)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은 담배부담금 등 자체수입 3조 2,908억원, 정부내부수입 1조 1,211억원 등 총 4조 5,444억원임.

2)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2헌가2 결정

압 전단계 교차비가 9.9배 높고, 관상동맥질환자 중 흡연경험 (현재/과거)자는 비흡연자 대비 복부 대동맥류 교차비가 3.4배 높으며,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 대비 중등도 관상동맥협착증 교차비 3.1배, 중증 관상동맥협착증 교차비 2.3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³⁾

○ 또한,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하여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을 급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⁴⁾, 담배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별부담금으로서 담배부담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근거인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⁵⁾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주 재원으로

3)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4) 흡연에 따른 고혈압 발생 확률은 남성이 16.9%, 여성이 27.6%로 증가하고, 체내 인슐린 작용에 영향을 주어 당뇨병으로 인한 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비흡연자의 약 2배가 되며, 흡연시 증가된 콜레스테롤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작용을 함(김빛나, 「성인 남성에서 흡연이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4.8.)

5)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 추진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질환 발병 후 치료보다는 주로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음.⁶⁾

○ 이에 따라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범위도 주로 건강생활 지원, 국민영양관리사업,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의 위험 요인 감소 등 사전 예방적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음.

○ 아울러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은 비감염성 질환(암, 심뇌혈관질환, 비만, 손상) 예방관리(정책목표)의 일환으로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①선행질환 예방관리 제도화, ②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강화 및 퇴원환자 연계체계 구축, ③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등 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 요인 개선 환경 조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발병 전 사전 예방적 사업과 발병 후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 개

6)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선 프로그램 개발, 증상 인지 교육 강화,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는 사업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목적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운용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반면에, 질환 발병 후 입원·수술비, 장기약제비와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이 갖는 사전 예방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사실상 의료비 지원 재원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치료의 영역은 건강보험 급여나 의료급여 등 일반회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담배부담금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목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목적, 국민건강증진계획과의 연계 필요성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예방·관리적 성격의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3년 제정된 「암관리법」은 제11조 등⁷⁾에서 암검진사업, 암치료, 국립암센터운영에

7)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① ~ ③ (생략)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에 이르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은 2004년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범위에 ‘암치료를 위한 사업’이 추가되었음.

- 이를 근거로 현재 기금 사업 중 암 관련 사업은 암검진, 호스피스,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암등록통계 생산 등이 있으며 암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기금 사업은 없음.

< 암 관련 기금 사업 개요>

사업명	목 적	주요내용	2026년 예산
국가암검진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암 사망률을 감소	-의료급여 수급자 6대암 검지 비용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검 진비용 자부담 10% 지원	93,732백만원
암검진 질관리 및 폐암검진 운영	암검진기관 평가 및 교육	-검진기관 사후관리 위탁 -온라인 교육 사이트 운영 -내시경 소독 교육	609백만원
국가암데이터 센터	국가 단위 암데이터(임상·공공· 유전체·영상)를 구축	-암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 사업 등을 위해 필 요한 암데이터를 수집·처리하 고, 분석 및 제공	559백만원
지역암센터	지역완결적 암관리체계 구축	-암관리사업 -노후장비 기능 개선	4,900만원
암생존자통합 지지사업	암생존자 건강관리, 학교 및 직업복귀를 지원	-암생존자가 경험하는 신체, 심리, 생활 어려움에 대하여 지지 서비스(집중상담 및 프 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자 원 연계 등	2,010백만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사업명	목 적	주요내용	2026년 예산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사업	진단-치료-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 구축	-원활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혈액종양전문의 등 인건 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지원	10,144백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 운영	지역별 암환자의료비지원대 상자 등록 및 지급 관리, 이용 통계산출	-암환자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및 주기적 점검 등	70백만원
호스피스사업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지원	-환자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 -임종 관리 및 사별 관리 등	11,102백만원
암등록통계	국가암관리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암등록본부 운영 -암등록통계 생성	1,486백만원
국가암정보센터	암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암정보 생산·홍보 -공공포털 운영 -정보채널 운영 등	1,067백만원
암관리 질향상 지원사업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공	-암환자 및 암생존자 대상으로 장루케어, 동작인식 재택운동, 복식호흡, 다학제 컨퍼런스 등 서비스 제공	1,181백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 이와 달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
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7년
제정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드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⁸⁾하고 있을 뿐, 「암관리

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3.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법」과 같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며⁹⁾, 현재 심뇌혈관질환 전문진료를 위해 설치한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비용 등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요하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위해 어떤 재원을 활용할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재정 여건뿐 아니라, '27.1월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출 구성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질병 치료를 위한 사업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미 건강증진부담금의 65%(약 2조원)를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지원하고 있고, 부담금 수입 부족으로 매년 약 1조원 가량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오고 있어 사실상 적자 운영 중이며, 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대응하여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질병 치료 사업으로 기금이 투입되면 건강증진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9)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09)이 2026년 1월 21일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임.

□ 대한의사협회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금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예방 사업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재정과의 기능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01

【참고1】	‘24~‘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별 지출액
--------------	-----------------------------------

(단위: 백만원)

부문	세부사업	‘24년 지출액	‘25년 지출액
취약계층지원	재활병원건립	7,000	5,500
취약계층지원	권역재활병원 지원	684	684
취약계층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2,460	2,700
사회복지일반	부담금환급금 지원	56	3,376
사회복지일반	기금관리비	87	74
아동·보육	모자보건사업	23,085	31,339
아동·보육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7,756	9,415
노인	치매관리체계 구축	192,056	176,219
노인	노인건강관리	7,156	6,580
보건의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2,876	2,517
보건의료	건강증진사업관리	55,605	50,872
보건의료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5,053	5,379
보건의료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894	893
보건의료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7,308	7,313
보건의료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사업관리	249	-
보건의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99,817	91,233
보건의료	국가암관리	69,334	83,570
보건의료	정신건강 증진사업	126,097	131,832
보건의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18,559	19,497
보건의료	건강증진및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4,737	4,736
보건의료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7,588	10,772
보건의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50,947	58,563
보건의료	혈액안전관리	8,670	10,561
보건의료	국가결핵예방	38,284	38,583
보건의료	국가예방접종실시	784,671	592,626
보건의료	만성질환 예방관리 연구	800	3,582
보건의료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66	-
보건의료	국민건강영양조사	5,378	5,142
보건의료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1,439	1,458
보건의료	에이즈 및 성병예방	16,311	16,426

부문	세부사업	'24년 지출액	'25년 지출액
보건의료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2,111	2,103
보건의료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2,241	2,247
보건의료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2,290	2,301
보건의료	희귀질환자지원	36,739	31,332
보건의료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9,469	9,063
보건의료	만성질환 예방관리	16,858	13,673
보건의료	의료관련 감염관리	824	-
보건의료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25,329	21,892
보건의료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12,341	10,394
보건의료	한국형 수술질향상 프로젝트(K-NSQP)(R&D)	6,110	6,667
보건의료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	557	743
건강보험	건강보험가입자지원	1,902,181	1,870,123
보건의료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원	56,953	66,371
보건의료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2,493	7,186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2】	질환 예방 지원 사업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구성
-------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비중(%)
계	1,050,884	100.0
국가예방접종실시	639,246	60.8
치매관리체계 구축	184,928	17.6
국가암관리	126,640	12.1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22,110	2.1
만성질환 예방관리	14,332	1.4
노인건강관리	7,595	0.7
에이즈 및 성병예방	16,561	1.6
국가결핵예방	39,472	3.8

※자료: 보건복지부